2020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0.11.23. (월) 14:00

☐ **장 소 :** M1 310 교무회의실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참석위원**

○ 재적위원 (6인) : 김두년 총장(위원장), 안정좌 총무처장, 김형수 기획처장, 이정미 교수 (경영학과), 조성훈 혁신교육지원팀장, 구자룡(외부전문가)

○ 참석위원 (5인) : 김두년 총장(위원장), 안정좌 총무처장, 김형수 기획처장, 이정미 교수 (경영학과), 조성훈 혁신교육지원팀장

○ 참석직원 (1인) : 황금진 재무회계팀장 (간사)

☐ **회의순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회의안건

○ 폐회

☐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개회선언**

간사는 기금운용심의회 재적위원 6인 중 5인이 참석하여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2020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회의안건**

1. 2020년 기금 정기예금(1년) 예치 여부 심의
2. 기금투자관리지침 제정(안) 심의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회의안건 : 1. 2020년 기금 정기예금(1년) 예치 여부 심의**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위원 총무처장은 우리대학기금 종류는 임의연구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이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약 3.3억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홍보팀에서 1년간 재예치 요청하였음을 설명하고 재예치 할지 아니면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언급하다.

위원장은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다

간사는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사용용도 및 목적은 2020년 2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생 및 교직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었고, 학생편의시설, 학습지원시설, 공식적인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학생 및 교직원 포상금으로 사용하도록 세부용도가 정해졌음을 설명하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할 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한다고 설명하다.

위원장은 재예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해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위원 기획처장은 현재 사용할 계획이 없고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약 3.3억이고, 홍보팀에서 예치요청한 금액이 약 4.1억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계속 적립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위원장은 재예치를 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에 금리제안서를 받아서 금리확인절차를 거쳐 예치해주기를 언급하다.

위원장은 2020년 기금 정기예금을 1년간 재예치하는 것으로 의결을 요구하자 참석위원 전원은 동의하다.

위원장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회의자료]

[기금 정기예금 예치 요청내역]

구분	예금구분	기존 정기예금액(원) 예치 요청금액(원)	적립재원	예치기간
임의연구	정기예금	525,991	2019결산기준 적립금	
기금	보통예금	5,564	2020.11.28. 만기해지이자	2019.11.18.~ 2020.11.28.
소 계		531,555		
임의장학	정기예금	22,759,581	2019결산기준 적립금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기금	보통예금	330,165	2020.11.18. 만기해지이자	2019.11.18.~ 2020.11.18.
		10,000,000	2020학년도 장학기부금	
소 계		33,089,746		
임의특정 목적기금	정기예금	311,298,776	2019결산기준 적립금	
	보통예금	4,515,783	2020.11.18. 만기해지이자	2019.11.18.~ 2020.11.18.
		70,000,000	2020학년도 발전기부금	
소 계		385,814,559		
합 계		419,435,860		예치심의 후 1년

○ 회의안건 : 2. 기금투자관리지침 제정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6, 우리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2조에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하게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22조의 2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어, 사립대학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예·결산 실태점검 및 회계 결산감사에서 기금투자관리지침이 제정되지 않을 시 지적사항이 되므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간사는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지침서 예시안을 제시해 놓은 것을 토대로 기금투자관리지침 제정(안)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위원 기획처장은 기금투자관리지침은 사립학교법 규정상 있어야 하며 회의자료의 1.1 투자관리지침 개요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 제2항과 더불어 '우리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를 명시하여 상위기관의 법과 우리대학의 상위규정을 명시하는 게 맞다며 지침 수정을 요청하다.

간사는 우리대학 규정을 명시하여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언급하다.

위원장은 지침에 우리대학 규정을 명시한 것을 보완하여 기금투자관리지침 제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요구하자 참석위원 전원은 동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기타의견

위원 기획처장은 기금운용심의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같이 법령상 있어야 하는 심의회로 학생위원도 참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학생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총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구성에 대한 추천을 받아 다음 기금운용심의회 부터는 학생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하다.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폐회**

이상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15:3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 11. 2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 김 두 년 (인)

위원 : 안 정 좌

위원 : 김 형 수 (인)

위원 : 이 정 미 (인)

위원 : 조 성 훈

위원 : 구 자 룡 (인)